

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

[2009. 5. 29]
조례 제324호

일부개정 2017. 3. 24 조례 제 735호
(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)

전부개정 2022. 4. 15 조례 제1033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등) ①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(이하 “구매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녹색제품 구매품목, 품목별 구매계획 금액 및 목표 구매율
2.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
3.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약특수조건, 제도개선 사항
4.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녹색제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증평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.

제3조(녹색제품 유통·판매 등 지원)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·판매를 위해 홍보 또는 필요한 행정·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관내 학교법인, 종교시설, 체육단체 및 기업 등(이하 “학교법인등”이라 한다)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·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녹색제품 구매 협조 요청 등) ① 군수는 학교법인등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
제5조(정보제공)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

증평균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

교법인등에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)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의 물품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·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
부칙(2022. 4. 15 조례 제1033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